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06

발의연월일: 2023. 2. 8.

발 의 자:조승래・이수진・정춘숙

김경협 · 강준현 · 김태년

서영석 • 한준호 • 최인호

유기홍 · 김영주 · 윤영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 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 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 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108 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제1항제5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4항까지 및 제9항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대통	4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	
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	
하여야 한다. <u>다만, 지역채널에</u>	<u><단서 삭제></u>
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	
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
	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
	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
	<u>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u>
	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0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70조제1항부터 <u>제4항까지</u> <u>의</u>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者
- 6. ~ 28. (생략)
- ②・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u>제4항까지</u> 및 제9항의-----
- 6. ~ 28.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